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8년 1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5(목) 오후 6시30분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1.25(목) 8:00	담당부서	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
담당과장	김재은 과장 (043-870-5340) 안성호 과장 (043-870-5450)	담 당 자	박해범 사무관 (043-870-5447) 김창용 연구관 (043-870-5445) 서순규 사무관 (043-870-5451)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업계 설명회 개최

- 일부 생활용품은 시험검사, 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 -
- 일부 전기용품 / 생활용품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 -
- 병행수입제품은 처음[旣]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허남용)은 작년 12.29일 국회를 통과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이하 전안법)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.

< 전안법 업계 설명회 개요 >

○ 일시 / 장소 : (1차) '18.1.25(목) 18:30 /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
(2차) '18.1.26(금) 14:00 /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(서울 삼성동)

○ 참석자 : 소상공인(섬유, 의류, 장신구 등), 관련 업계(전기용품, 생활용품, 구매대행, 병행수입 등), 소비자단체 등

○ 1차 설명회는 전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류 분야 소상공인의 참석 편의를 위해 1.25.(목) 저녁에 동대문시장 인근에서, 2차 설명회는 보다 광범위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날인 1.26.(금) 14:00 섬유센터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
□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작년말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 내용,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,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한다.

①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

○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금년 7.1.부터 시행한다.

-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,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,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,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

- 구매대행은 그간 국가통합인증(KC)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, 향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

* 구매대행 :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,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(법 제2조제16호)

- 병행수입 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 면제

* 병행수입 :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·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(법 제2조제17호)

○ 다만, 소상공인, 구매대행업자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.30.까지 다음 의무를 면제한다. (법 부칙 제3조~제5조)
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: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(시험성적서 등) 보관 의무,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(KC마크 등) 게시 의무

- 생활용품 구매대행 : 안전 관련 정보(KC마크 등) 표시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의무,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(KC마크 등) 게시 의무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4-12 17:49:59

②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

○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품목을 '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'으로 지정한다. (시행규칙 개정 사항)

○ 지정된 품목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의무는 있으나,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,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표시 등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.

○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현 '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' 생활용품 총 39개 품목 중에서 23개를 선정했다.

* 개정 이전 전안법상 안전관리대상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, 안전확인대상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개로 분류되며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 위해도가 가장 낮음

○ 선정안은 한국규제학회가 수행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에서

- ①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②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등 주요국 집중 관리 품목 ③ 제품 특성상 현 규제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.

<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 선정안 >

현재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(39 품목) ➪	공급자 적합성확인(13)	모터달린 보드, 속눈썹 열 성형기, 킥보드, 바퀴달린 운동화, 인라인롤러스케이트, 물탱크, 자동차용 휴대용 잭, 휴대용 사다리, 롤러스케이트, 창문블라인드, 쇼핑카트, 쌍꺼풀용 테이프, 가 속눈썹
	안전기준 준수대상 (23)	간이 빨래걸이, 안경테, 선글라스, 가정용 섬유제품, 가죽제품, 스테인레스 수세미, 양탄자, 물안경, 침대매트리스, 접촉성 금속장신구, 가구(서랍장 제외), 휴대용 경보기, 고령자 위치추적기, 우산 및 양산, 벽지 및 종이장판지, 시각장애인용 지팡이, 텐트, 반사 안전조끼, 고령자용 신발,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, 고령자용 지팡이, 폴리염화비닐관, 고령자용 목욕의자
	식약처 이관(3)	화장지, 면봉, 화장비누

③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

○ 과거 전안법은 국가통합인증(KC)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구매대행이 가능했데,

- 구매대행업의 특성상 제품이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○ 이에 따라 개정 전안법은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(KC)마크가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.

< KC마크 없는 제품 구매대행 허용 여부 >

위해도	안전관리수준	전기용품	생활용품
고(高) ↑ ↓ 저(低)	안전인증	일부 허용	일부 허용
	안전확인	일부 허용	허 용
	공급자적합성확인	허 용	허 용
	안전기준준수	-	허 용

try of Trade,
try and Ene

- 안전기준준수, 공급자적합성확인(전기·생활용품), 안전확인(생활용품) 대상은 모든 품목이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며,

- 안전인증(전기·생활용품), 안전확인(전기용품)은 일부 품목에 한해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.

○ 안전인증(전기·생활용품), 안전확인(전기용품) 대상 총 113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(KC)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(안)은 78개로써 검토 대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선정했다.
(시행규칙 개정 사항) (붙임자료 참조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4-12 17:49:59

-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완제품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 (전선 및 코드류, 스위치, 승강기 부품,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)

- 국제기준 없이 국내기준만으로 관리하는 품목 (전기 온수매트, 전기찜질기 등)

 * 전기용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 안전기준이 있는 품목은 주요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같은 기준에 부합

- 해외에서 결함보상(리콜)이 많거나, 화재·인명사고 등 가능성이 높은 품목 (일반 조명기구, 배터리, 가스라이터, 비비탄총 등)

< KC마크 없는 제품 구매대행 허용 품목안 >

안전관리수준	전기용품		생활용품	
	허용	不허용	허용	不허용
안전인증	25품목	14품목	2품목	9품목
안전확인	51품목	12품목	-	-

④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

○ 개정 전안법은 병행수입 제품이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수입 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.

○ 동일 모델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과 이미 인증받은 수입제품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. (시행규칙 개정사항)

□ 개정 전안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의류, 금속장신구, 가죽제품 등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호소한 규제들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업계 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.

□ 한편 국표원은 품목 선정 과정에서 사고, 리콜사례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, 다음 보완대책을 함께 시행하여 소비자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(시장감시)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강화,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설립 (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) 등

○ (위해제품 유통차단) 리콜제도 개편안 (업체 자발적 리콜 활성화, 이행점검 강화 등) 마련,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등

○ (사각지대 해소) 비관리제품·신제품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 마련

□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입법 예고 ('18.1~3월), 규제 심사(4월), 법제처 심사(5월), 차관회의·국무회의(6월)를 거쳐, 7월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예고기간인 3월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,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(전기통신제품안전과, 생활제품안전과)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로 제출하면 된다.

 * 자세한 사항은 입법 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참고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박해범 사무관(☎ 043-870-5447), 김창용 연구관(☎ 043-870-5445), 생활제품안전과 서순규 사무관(☎ 043-870-54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4-12 17:49:59

붙 임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선정(안)

구분	전기용품		생활용품	
	허용	불허	허용	불허
안전인증	변압기 및 전압조정기, 전기청소기,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, 주방용 전열기구,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, 모발관리기,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, 주방용 전동기기(AC), 전기 액체가열기기,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(전기침대 제외), 전기온수기, 전기냉장·냉동기기, 전자레인지, 전기건조기, 전열기구(전열보드 제외), 전기마사지기, 냉방기, 전기가열기기, 전격살충기(AC), 팬 및 레인지후드, 화장실용 전기기기, 가습기, 전동공구(AC), 직류전원장치(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제외), 안정기내장형 램프(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) 등 **25개 품목**	전선·케이블 및 코드류, 스위치, 전자개폐기,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,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, 퓨즈, 차단기, 전기충전기,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, 전기욕조, 유체펌프, 램프홀더, 일반조명기구,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등 **14개 품목**	물놀이기구, 압력냄비·압력솥 등 **2개 품목**	승강기부품 6종(조속기, 비상정지장치, 완충기,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, 승강장문 잠금장치,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), 자동차용 재생타이어, 가스라이터, 비비탄총 등 **9개 품목**
안전확인	고주파웰더, 전기용접기, 과일껍질깎이, 전기용해기, 이·미용기기,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, 구강청결기, 해충퇴치기, 전기집진기, 서비스기기, 전기에어커튼,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, 게임기구,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, 전기훈증기, 산소이온발생기, 전기세척기(초음파세척기 제외), 전기차 충전기, 가정용전동재봉기, 사우나기기,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, 공기청정기(AC), 전기분무기, 주방용 전동기기(DC), 전기찜질기(DC) 및 발보온기(DC), 전격살충기(DC), 자동판매기, 전기소독기, 제습기, 음식물처리기, 텔레비전수상기, 디스크 플레이어, 오디오시스템, 전자악기, 오디오프로세서, 영상프로세서, 모니터, 프린터, 프로젝터, 문서세단기, 천공기, 제본기, 복사기, 무정전전원장치, 디지털TV(스마트 TV, IPTV등), 코팅기, 노트북컴퓨터(테블릿PC를 포함), 백열등기구, 그 밖의 조명기구, 방전램프(무전극형광램프 제외), 그 밖의 램프(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제외) 등 **51개 품목**	전기기기용 제어소자, 컴프레서(compressor), 폐열회수환기장치, 에너지저장장치, 기포발생기, 전기온수매트, 수도동결방지기, 전기정수기, 전기헬스기구,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,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, 전지(충전지만 해당) 등 **12개 품목**	-	-

Minist
Indus